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7-04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누2194 취득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구합22192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4. 20.
판 결 선 고	2018. 5. 18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[표1] 기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'정당세액'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. 피고가 2016. 11. 18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[표2] 중 순번 1, 2 기재 취득세, 지방교육세에 관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7. 4. 3. 원고에 대하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7-04

한 별지 1의 [표2] 중 순번 3 내지 6 기재 취득세, 지방교육세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내용

원고는 당심에서도,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골프장을 조성하여 주식회사 B(이하 '모회사'라 한다)에 임대한 것은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, ② 그렇지 않더라도, 모회사가 골프장 운영사업의 위험성을 우려한 대주주의 요구나 자금조달상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개발사업은 골프장 조성사업만이 아니라 그 운영사업까지 포함된 것인데, 원고가 골프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기도 전에 모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한편, 원고가 주장하는 자회사 설립 경위 등의 사정은 모회사의 내부 사정에 불과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7-04

뿐, 원고에게 존재하는 사정으로서 법률상의 장애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용달

판사 김태현

판사 곽병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7-04

별지 1

[표 1]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

순번	처분일	귀속연도	과세표준	부과처분			정당세액			취소청구 금액
				재산세	지방교육세	소계	재산세	지방교육세	소계	
1	2016. 7. 6.	2016년	234,843,210	587,100	117,420	704,520	293,550	58,710	352,260	352,260
2			2,032,391,067	5,080,970	1,016,190	6,097,160	2,540,485	508,095	3,048,580	3,048,580
3			3,610,632,900	9,023,250	1,804,410	10,827,660	4,511,625	902,205	5,413,830	5,413,830
소계			5,877,867,177	14,691,320	2,938,020	17,629,340	7,345,660	1,469,010	8,814,670	8,814,670
4	2016. 8. 10.	2015년	2,012,892,735	2,516,120	503,220	3,019,340	-	-	-	3,019,340
5			3,331,809,600	8,324,600	1,664,620	9,989,220	4,162,300	-	4,162,300	5,826,920
6			8,165,495,600	3,778,540	755,710	4,534,250	-	-	-	4,534,250
소계			23,510,197,935	14,619,260	2,923,550	17,542,810	4,162,300	-	4,162,300	13,380,510

[표 2]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액

순번	신고구분	과세대상	과세표준	취득세	지방교육세	세액 합계	불복대상
1	당초(일반) 신고	토지 유상취득	19,400,000,000	776,000,000	77,600,000	853,600,000	경정청구 거부처분
2	수정신고	토지 과표누락분	604,417,734	33,216,360	3,079,860	36,296,220	
소계			20,004,417,734	809,216,360	80,679,860	889,896,220	
3	기한 후 신고	토지 지목변경	35,185,948,761	927,642,340	-	927,642,340	신고시인 결정
4		건축물(클럽하우스) 원시취득	8,536,831,644	315,091,020	15,273,410	330,364,430	
5		건축물(클럽하우스) 원시취득	100,552,930	3,446,980	164,780	3,611,760	
6		건축물(출입구 캐노피) 원시취득	11,050,000	284,890	-	284,890	
7		건축물(흡연부스)	9,090,909	228,860	-	228,860	
소계			43,843,474,244	1,246,694,090	15,438,190	1,262,132,280	

끝.